

우) 150-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 - 5 동부증권 B/D 11F /담당 이나나 전화(02)787-3815 / FAX (02)787-3809

마 케 팅 : 제08-13-4P(호)

2008. 9. 12.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참 조 :

제 목 : 투자신탁 약관 변경 통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대상 펀드 : 동부 델타-ACE 1 단위 주식혼합투자신탁 제 5-2 호

2. 변경 내용 :

현 행	변 경
제 9 조(추가신탁)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은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,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.	제 9 조(추가신탁) 자산운용회사는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,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.
제 11 조(신탁계약기간)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 년간으로 한다. 단, 신탁계약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제 11 조(신탁계약기간)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지로 한다.
제40조(투자신탁보수)①~②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625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900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75	제40조(투자신탁보수)①~②(중전과 동일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

3. 시행일 : 2008. 9. 14

첨 부 : 1. 변경약관 1부

2. 투자설명서 1부. 끝.

수신처 : 하나은행(판매), 하나은행(수탁), HSBC펀드서비스, 증권예탁원

동부자산운용주식회사

대표이사 한동직